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
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2023. 1. 19.(목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변종오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2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7일

-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변종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,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중복의 소음대책지역은 청주비행장(공군17 전투비행단), 성무비행장(공군사관학교), 충주비행장(공군19전투비행단)으로 해당 지역의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<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>

제5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 등)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 대책심의위원회(이하 "중앙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,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.

<이하 생략>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,
 -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대책의 수립·시행과 지원확보

노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.

<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>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는 충청북도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관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“군용비행장”, “군사격장”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여 일반인들이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5조는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6조는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‘23. 1. 3.~‘23. 1. 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충남과 경북 2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, 기타 “특이한 사항” 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대책수립·시행,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,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조례안 제5조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 사업,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 제정·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사업 선정 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선정, 관련예산 확보 등 충청북도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관한 소음대책 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,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용비행장”이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.
2. “군사격장”이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.
3. “소음대책지역”이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.
4. “인근지역”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
5. “소음피해 지역주민”이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

상으로 피해규모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,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2.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
3.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
4.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
5.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실태조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행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용항공기”란 「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.
2. “군용비행장”이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(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),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.
3. “군사격장”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.
4. “소음대책지역”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5. “소음피해 보상”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소음영향도”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
 2.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
 3. 소음피해 보상 방안
 4. 재원조달 방안
 5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·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>

1. “군용항공기”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·회전익항공기·무인항공기·비행선(飛行船)·활공기(滑空機),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.
- 2.~4. (생략)

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 4. 23.>

- 1.~3. (생략)
4. “항공작전기지”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전술항공작전기지 :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
 - 나. 지원항공작전기지 :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
 - 다. 헬기전용작전기지 : 군의 회전익항공기(回轉翼航空機)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
 - 라. 예비항공작전기지 :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,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
- 5.~15. (생략)

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

2. 비용발생 요인

- 실태조사
-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을 위한 소음피해 예방방지 필요사업, 소음피해 주민복지 증진사업, 생활환경 개선사업, 법률상담 지원, 소음피해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등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실태조사)
- 충청북도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지원사업)

※참고 : 『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5조,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국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2024년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을 순차적으로 지정·고시 예정으로 주민 복리 증진사업추진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국방부 계획 수립 시 5년마다 조사 (2026년)
- 대상지역과 범위 : (2021년)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+(2024년) 조사 예정인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포함

나. 추계 결과

○ 소음대책지역 실태조사 : 용역 100,000천원×1식 = 100,000천원

○ 기타지원사업 : 추계 불가

※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(예정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-	-	-	100,000	-	100,000
실태조사	-	-	-	100,000	-	100,000
기타지원사업	-	-	-	-	-	-
재원 조달	-	-	-	100,000	-	100,000
도 비	-	-	-	100,000	-	100,000
특별회계						0
구.군비						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0

※ 5년마다 실태조사 용역 추진